

인문사회과학연구소 규정

제정 2019. 12. 1

- 제1조 (명칭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등 4차산업 분야는 물론 인문학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제분야를 연구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AI,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소재지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- 제4조 (사업)**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AI,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및 조사
 2.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
 3. 학술지의 정기적 간행
 4. 국내외 연구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와의 협력
 5. 기타 연구소 발전에 필요한 사업
- 제5조 (구성)**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소 장 : 1명
 2. 운영위원 : 약간 명
 3. 연구위원 : 약간 명
- 제6조 (위촉)** 본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제7조 (소장의 직능)**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8조 (운영위원회)**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9조 (재정)**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- 제10조 (회계연도)**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- 제11조 (폐소)**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- 제12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 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 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 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- 제13조 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 (운영세칙)**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인문학연구소 규정과 사회과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